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

아래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정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사실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당초	변경	
원기연	75. 2.23.	서울시	업무정지 12개월 (2022. 4. 4.~2023. 4. 3.)	취소	건설기술경력증 대어
변정분	71. 5. 4.	경기도	업무정지 3개월 (2022. 5. 2.~2022. 8. 1.)	취소	근무경력 거짓신고

2. 법적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3]
-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 [별표 2]

3.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송달일)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기타방법

- 위 공고문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02-2110-67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